

예 산 총 칙

2020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54,646,369	28,639,391
일반회계	883,813,862	26,514,416
특별회계	70,832,507	2,124,975
공기업특별회계	61,434,303	1,843,029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2,816,040	684,481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38,618,263	1,158,548
기타특별회계	9,398,204	281,946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662,156	49,865
의료보호특별회계	3,033,090	90,993
수질개선특별회계	527,142	15,814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702,745	21,082
주택사업특별회계	488,936	14,668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특별회계	2,984,135	89,524

제 2 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 세입·세출예산 " 과 같다.

제 3 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비비는 " 13,445,394 " 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 기준인건비 " 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